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8497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4. 8. 22.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 8. 29.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KOSPI 지수 X 100%)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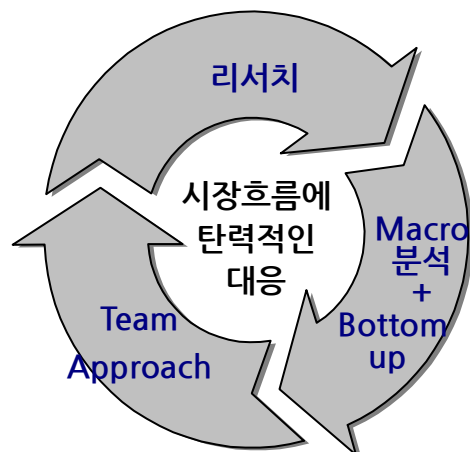
1) 기본 운용전략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 흐름에 유연한 자세로 운용하고,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수익추정을 통하여 기업의 평가가치(valuation) 분석 및 기업의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펀드 운용에서 위험은 주가 변동이 아니라 기업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로 정의하고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 없는 주가의 등락을 초과수익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연간 2,000회 이상의 기업탐방, 세미나, 회의 등 현장 중심의 리서치 활동으로 기업의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를 감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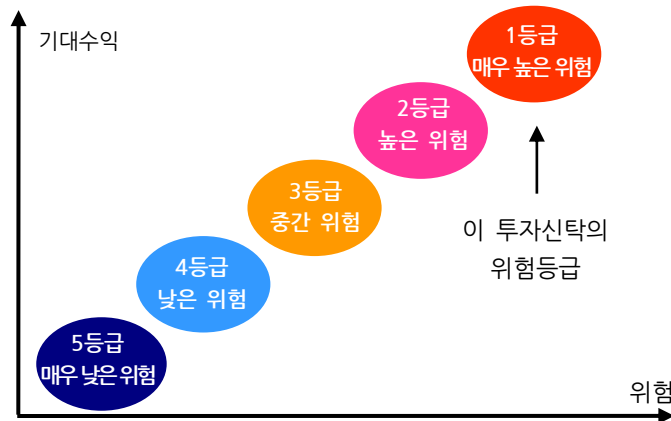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3.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 2014.7.31./ 단위:개,억원)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정인기	1971년	책임 운용역 (상무)	8	5,385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력 97.07 ~ 02.08 한화증권 기업분석팀 02.09 ~ 04.11 신영투자신탁운용 투자전략팀 04.11 ~ 09.1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팀 10.01 ~ 11.05 대우증권 Prop. Trading 부 11.05 ~ 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안홍익	1976년	부책임 운용역 (부장)	15	9,147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경력 03.01~05.06 SK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05.06~07.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섹터애널리스트 07.05~09.04 BNP PARIBAS 증권 애널리스트 09.05~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3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 3 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운용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3.06.27 ~14.06.26	12.06.27 ~13.06.26	11.06.27 ~12.06.26	10.06.27 ~11.06.26	09.06.27 ~10.06.26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펀드[주식]	19.67	4.77	-12.20	23.41	36.04
비교지수	11.86	-1.89	-13.06	20.87	24.04
A 클래스	17.18	2.52	-14.17		
비교지수	11.86	-1.89	-13.06		
C1 클래스	17.33	2.67	-14.05		
비교지수	11.86	-1.89	-13.06		
C2 클래스	17.47	2.79	-13.91		
비교지수	11.86	-1.89	-13.06		
C3 클래스	17.57	2.90			
비교지수	11.86	-1.89			
C4 클래스	17.70	3.01	-13.75	21.46	33.98
비교지수	11.86	-1.89	-13.06	20.87	24.04
C5 클래스	17.00	2.53	-14.30	20.77	33.05
비교지수	11.86	-1.89	-13.06	20.87	24.04
Ce 클래스	18.74	3.96	-12.93	22.50	
비교지수	11.86	-1.89	-13.06	20.87	
W 클래스	17.54	2.77	-14.04	20.99	33.40
비교지수	11.86	-1.89	-13.06	20.87	24.04
Cp 클래스	17.75	3.05	-13.72	21.43	
비교지수	11.86	-1.89	-13.06	20.87	

I 클래스	18.71	3.90	-12.97	22.41	
비교지수	11.86	-1.89	-13.06	20.87	

주 1) 비교지수 : KOSPI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A	C1	C2	C3	C4	C5	Ce	Cp	W	I	S
펀드 코드	85268	85269	94036	94047	94048	94069	95187	24712	94308	18879	AP789
가입 자격	선취 판매 수수료 징구	제한 없음	C1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2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3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4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한 자	판매사의 일임형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및 특정 금전 신탁	집합 투자 기구, 외국법인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미국ERISA관련 투자자

①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ERISA관련투자자”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판매회사(이하, “지정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해서만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정판매회사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미국의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이하, “ERISA”라 한다)에 의해 선관주의의무와 특정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

나) 미국의 키오 플랜(Keogh plan)과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Internal Revenue Code의 Section 4975에 적용 받는 투자자

다) 가) 또는 나) 투자자의 자금을 일부라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 등인 투자자

라)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 등의 동일 종류 지분증권(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을 ERISA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가) 내지 다)의 투자자가 합산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법인 등인 투자자

② ERISA관련투자자는 투자할 수익증권의 종류와 투자금액 등을 지정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회사는 ERISA에서 규정한 25% 테스트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W	Cp	I	Ce	S		
집합투자업자 보수	0.750	0.750	0.750	0.750	0.750	0.750	0.750	0.750	0.750	0.750	0.750	0.75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00	1.500	1.350	1.220	1.100	1.000	0.000	0.850	0.030	1.000	0.350		
신탁회사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기타비용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사유 발생 시
총보수비용	1.700	2.300	2.150	2.020	1.900	1.800	0.800	1.650	0.830	1.800	1.150		
증권거래비용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사유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6.27~2014.06.26]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6.27~2014.06.26]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	277	647	1,042	2,146
C	242	697	1,124	2,282
Ce	189	585	1,006	2,178

Cp	173	537	925	2,011
W	84	263	456	1,016
I	87	272	473	1,053
S	121	376	651	1,436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2) A 클래스와 C 클래스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며 A 클래스와 Ce 클래스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3) S 클래스는 10년 이상 보유를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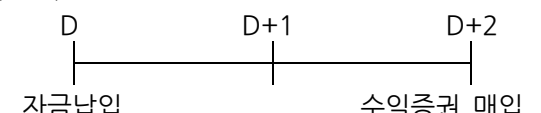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 절차 및 방법

□ 전환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에 따라 다음 경우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 C1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2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3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4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5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 ③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V. 요약 재무재표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6기	제 5기	제4기
	(2014.06.26)	(2013.06.26)	(2012.06.26)
운용자산	489,610,830,589	598,818,912,277	753,230,804,027
증권	488,349,767,860	596,695,910,140	749,823,663,650
현금 및 예치금	61,792,729	135,082,137	10,790,377
기타 운용자산	1,199,270,000	1,987,920,000	3,396,350,000
기타자산	14,792,071,597	8,334,686,496	7,512,615,709
자산총계	504,402,902,186	607,153,598,773	760,743,419,736
기타부채	43,097,876,516	6,830,109,726	9,174,974,302
부채총계	43,097,876,516	6,830,109,726	9,174,974,302
원본	461,305,025,670	673,284,420,625	869,824,681,359
이익조정금	0	-72,960,931,578	-118,256,235,925
자본총계	461,305,025,670	600,323,489,047	751,568,445,434
손익계산서			
항 목	제6기	제5기	제4기
	(2013.06.27 - 2014.06.26)	(2012.06.27 - 2013.06.26)	(2011.06.27 - 2012.06.26)
운용수익	110,736,736,708	52,026,672,012	-89,953,100,898
이자수익	140,650,946	114,297,317	254,316,713
배당수익	5,310,373,525	7,383,180,996	8,144,124,170
매매/평가차익(손)	105,177,964,001	44,444,292,539	-98,351,541,781
기타수익	107,748,236	84,901,160	115,443,358
운용비용	8,883,537,886	11,406,038,743	12,000,325,273
관련회사보수	8,864,118,752	11,381,753,515	11,969,756,883
매매수수료	1,506,644	278,478	0
기타비용	17,912,490	24,006,750	30,568,390
당기순이익	101,853,198,822	40,620,633,269	-101,953,426,171
매매회전율(%)	118.20	111.03	116.71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주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